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수품의 품질보증 절차 등 법률에 규정〉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81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업무 개요	9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2) 발의연월일 : 2025. 12. 22.
- 3) 회부연월일 : 2025.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의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 정립 의무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품질보증) ①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8조(품질보증) ① (현행과 같음) <u>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u> <u>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u> <u>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u> <u>⑤ 제4항에 따른 품질보증의 검사를 통과한 군수품의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u>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해당 군수품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 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 현행 「방위사업법」 제28조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할 때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소요군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품질보증 업무 중 연

1) 「방위사업법」 제28조(품질보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구개발(합정 및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 있는 품질보증, 신속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고 있음.²⁾

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령)³⁾에서는 단계별 품질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관리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작전운용성능, 전력화 등의 일정이나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상 오류 또는 수정 등에 관한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통제
3.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전투함 등 합정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양산, 구매(국내구매로 한정한다)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 등 품질보증
 - 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 다. 연구개발(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 품질보증
 - 라. 삭제 <2025.12.23>
 - 마. 삭제 <2025.12.23>
 - 바. 품질보증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
 - 사. 품질보증 수행과정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분석·정보관리
4. 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5. 삭제 <2021.2.2>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
7. 제55조제6항에 따른 방산물자 관리 현황의 확인
- 7의2. 제64조제2항에 따른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에 관한 분석
8. 제67조에 따른 비축 원자재의 종류·수량의 확인 및 규격·품질의 검사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품질보증)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

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 ②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한다.<신설 2014. 11. 7., 2016. 3. 31.>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7.>
- ④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2

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을 정립할 때 고려사항과 유해물질의 품질검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8조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업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무기체계 획득·운용 등 단계별 품질보증 업무 내용]

단계	수행기관	품질보증 내용
연구 개발	방위 사업청	• 무기체계 품질보증 • 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등) 검토 • 시험평가 관리 등
	국방기술 품질원	• 함정무기체계의 기성검사 등 품질보증 • 시제품을 전력화 하는 사업(무기체계)의 품질보증 • 신속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 무기체계 품질보증기술지원
양산	국방기술 품질원	•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 지정)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 유도무기의 경우 품질인증사격시험 등
운용 유지	국방기술 품질원	•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 지정)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품질보증 관련 업무 • 대군지원업무, 탄약 오작용 처리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주의4에 따라별표 4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7.>

-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국방규격의 확인 및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의 군수품 품질검사 근거 및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에서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의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국회입법원칙⁴⁾에 충실하고 품질보증제도의 중요사항인 그 적용기준과 절차를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품질보증 정책의 객관성과 법률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한편, 행정입법에 맡겨야 할 사항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렵고 탄력적 입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⁵⁾이 있으나,

개정안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은 품질보증에서의 품질보증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개별 군수품의 성격에 따른

4) 동 헌법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에 대한 규범형성권을 국회에 전속시킴으로써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호를 실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5) 같은 취지에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국방부의견**: 현재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 행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개정 실익이 낮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군수품의 변화를 고려하여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행처럼 국방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의함.

세부적인 품질보증 절차를 직접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 개정안의 내용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이 개정안에서 직접 규율하는 사항이 매우 전문적·세부적이거나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빈번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규정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더라도 법 집행이나 제도 운용에 있어서 특별한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방위사업법」 제28조의 현행 및 개정안 요지]

조항	현행 요지	개정안 요지
제1항	○ 군수품의 품질검사 ○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제2항		○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마련 ○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청취
제3항		○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 지정
제4항		○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군수품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 실시
제5항		○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통과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제6항		○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제7항	○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에 위임	○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에 위임

□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품질보증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한 특수한 성격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동 조항은 현행대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⁶⁾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등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은 품질보증 제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12

6)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규정]

제24조(품질보증) ①방위사업청장이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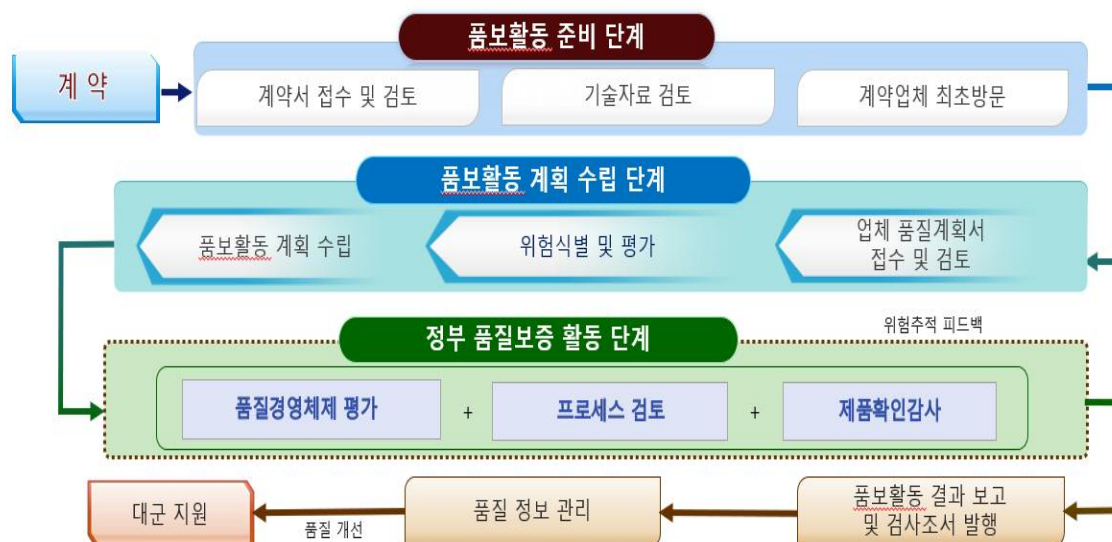
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 참고자료 :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업무 개요

□ 절차별 품질보증 업무

절차	업무 내용
품보활동 준비단계	- 계약서 및 기술자료(국방규격 등) 검토 - 계약업체 방문(정부품질보증 절차 소개 및 업무협의)
품보활동 계획수립단계	- 위험식별 및 평가(품질자료 수집 및 위험등급 평가) - 정부품질보증 계획수립
정부품질보증 활동단계	-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 계약/규격 요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결과보고 및 검사조서 발행 - 운용유지단계 품질보증 업무

□ 품질보증 절차도



□ 품질보증 예산 집행내역(2025년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집행률(%)
유도탄약 품질보증 사업	320,000	319,340	99.8
지휘정찰 품질보증 사업	313,000	312,783	99.9
함정 품질보증 사업	416,000	414,702	99.7
기동화력 품질보증 사업	379,000	377,212	99.5
항공 품질보증 사업	291,000	290,924	100.0
전력지원체계 품질보증 사업	42,433	42,335	99.8
총계	1,761,433	1,757,296	99.8

* 자료: 국방기술품질원